

	<b>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</b>	규정번호	3-8-1
		제정일자	2018.03.01.
		개정일자	2020.03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(이하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24조의3 및 대학평의회규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와 개방감사(이하“개방임원”이라 한다) 선임대상자를 추천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2.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

② 추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추천위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, 보궐 위촉된 추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) ①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둔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④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개방임원의 추천)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(재직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전)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 수를 개방감사의 경우 단수로 법인에 추천한다.

제6조(개방임원의 자격) ① 개방임원은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 중 목사, 장로 또는 권사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.

1. 법령,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
2.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

제7조(회의) ① 법인의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추천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고하고 이를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소집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

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사립학교법시행령, 학교법  
인 새빛학원 정관을 준용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